

[일련번호: 1]

경기도체육회

기관경고

[제 목]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·집행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안산시체육회

[내 용]

1. 업무개요

안산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¹⁾, 제36조(예산의 편성)²⁾ 및 「안산시체육회 정관」 제12조(총회의 기능),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, 제41조(재원), 제46조(예산편성 및 결산)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회 사업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·집행 업무를 하고 한해 지출한 예산을 총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.

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 및 「정관」 제41조(재원), 제46조(예산편성 및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

-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-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·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.

결산)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있으며, 「정관」 제12조(총회의 기능), 제18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, 제46조(예산편성 및 결산)에 따라 사업결과 및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받도록 되어 있고,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런데 정기종합감사 중(*.**~*.***) 체육회의 ****년도부터 ****년도까지 *개년의 세입·세출을 검토한 결과 안산시 보조금만 이사회를 통해 의결을 거쳐 편성 및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국도비의 경우는 ****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만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여 편성 및 집행하였다.

경기도체육회를 통해 교부되는 국도비 역시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여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. 그러나 대의원총회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전체예산의 결산심의가 이루어졌다.

[조 치 사 항] 안산시체육회장은

****년도 국·도비 예산편성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하고 *월 *일까지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추후 예산편성 없이 보조금 집행관리가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보조금 관리 및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부적정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: 2]

경기도체육회

개선조치

[제 목]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

[소 속 기 관] 안산시체육회

[내 용]

1. 업무개요

안산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는 체육회 「정관」에 따라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는 「정관」 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제1항에 따라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인 학교체육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,

또한 경기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「시군체육회 규정」 제36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 제4항에 의거,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「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하지만 감사기간 확인 결과 체육회는 체육회 「정관」 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에 따른 제규정³⁾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며, 사무국 내부 인사 관련 기능을

3)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「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가진 「인사위원회」, 체육회 제규정 관리 및 체육회 관련 단체·개인에 대한 포상, 징계 등 기능을 가진 「스포츠공정위원회」 등 2개의 위원회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.

그리고 각종 위원회 중 경기력향상위원회와 같이 전문 체육분야 경기력 발전, 체육장학금 지급 및 추천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,

또한 「스포츠클럽법」 제8조(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)에 따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등록(지정)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 등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과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지원을 심의·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.

[조 치 사 항] 안산시체육회장은

본회 「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여, 규정을 제정하시고, 체육회 「정관」 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한 이사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. (개선)